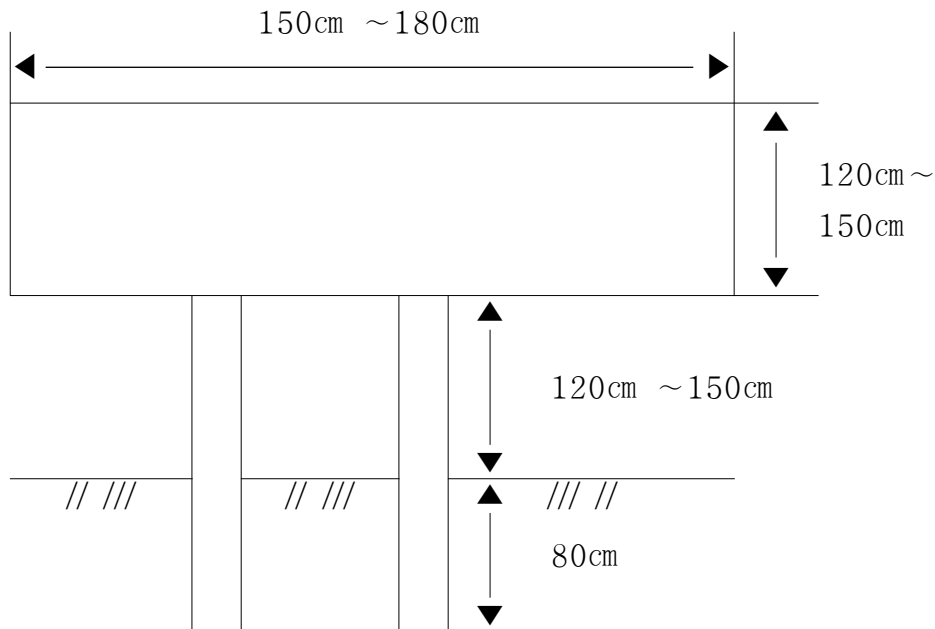


[별표5] <개정 2001.11.8>

안내판 및 표주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안내판

가. 규격



재질 및 두께 : 3mm~4mm두께의 철판

바탕색 : 청색

글 씨 : 흰색

나. 내용문안

알 림

- 1.이 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.
- 2.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아 래

(금지행위)

- (1)특정수질유해물질·폐기물·오수·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
- (2)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
- (3)수영·목욕·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
- (4)행락·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
- (5)어·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- (6)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
- (7)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. 다만,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(일반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)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

(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)

- (1)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변경 또는 제거

(2)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

(3)토지의 굴착·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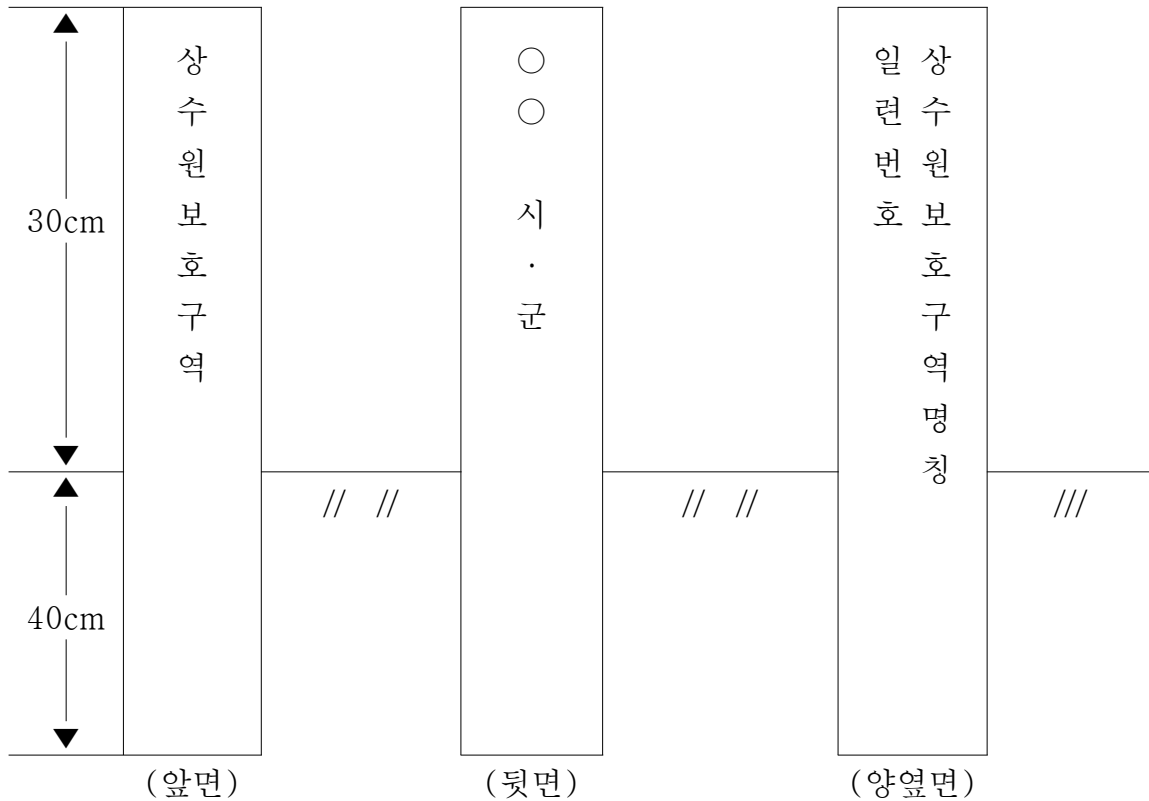
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

년 월 일

○○도지사 · 시장· 군수

○○경찰서장

2.표주



	20cm
20cm	

바탕색 : 흰색

글 씨 : 빨간색